

2023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개선(A/S) 지원사업 공고

인천 제조기업의 제조공정 개선과 제조역량 혁신을 위해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개선(A/S)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인천 제조기업의 제조공정 개선과 제조역량 혁신
- 사업기간 : 2024. 1. ~ 2024. 8
- 지원내용
 - 기업의 노후설비 개량, 부품 기능개선 등 저비용 고효율의 디지털화 지원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지원유형	인천시 지원금 (기업당, 최대)	기업수	수행기간	비고
제조솔루션 고도화 지원	최대 2,000만원이내 (총사업비 70%)	5개사	4개월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도입기업이 부담

지원절차



2.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 기업의 노후설비 개량, 부품 기능개선 등 저비용 고효율의 디지털화 지원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지원범위 : 총사업비의 70%,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인천시 지원금 (기업당, 최대)	기업수	수행기간	비고
제조솔루션 고도화 지원	최대 2,000만원이내** (총사업비 70%)	5개사	4개월*	부가세 및 지원한도 최소금액은 도입업이 부담

* 구축 진행도에 따라 사업 사전종료 및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인천TP 승인 必)

** 기업별 지원금은 예산현황에 따라 2,000만원 이내로 지원될수 있음

- 제조솔루션 고도화 지원
 - S/W, H/W 및 솔루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품 교체·업데이트
 - 제조 공정기술, 생산기술, 제조기술 등에 대한 개선 지원
 - 스마트공장 관련 S/W 정보보안 솔루션 및 보안서비스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완료 기업 중 구축 사업장이 인천 내 위치한 기업 (수준확인 기업 포함)
 -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이며, 동일사업자,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신청 제외 대상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 지원방식 :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자체 구성 후 사업지원*

* 컨소시엄 구성 지원 없음

3. 세부 추진내용

□ 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주체	세부 수행내용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및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공식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등 유관기관 공고 게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를 통해 접수 - 접수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공장등록증, 표준제무제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요건검토) 제출서류 담당자 요건검토 후 적격기업 대상 통보, 전문가 진단 및 사업 추진
↓		
선정평가	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심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위원회(5인) 구성후 지원기업 선정
↓		
원가감리	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감리) 선정기업 사업계획서 내 책정된 사업비 적정성 확인을 위해 원가계산기관에 사업비 적정성 검토 의뢰
↓		
협약체결	ITP 도입기업 공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금액 기준으로 인천테크노파크-도입기업-공급기업 간 3자 협약체결
↓		
사업추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ITP 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후 지원금 지급 요청 (도입기업→ITP) - 신청서류 : 신청공문, 인천시 지원금 지급신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 협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지원금 신청 - 기한내 미신청시 협약 해지 및 후순위 기업 선정 ○ 제출서류 검토 확인 후 지원금 지급 (ITP → 도입기업)
↓		
중간점검	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점검) 필요시 ITP 담당자가 구축 사업장 방문하여 중간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사업 정상 추진 여부
↓		
최종평가	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점검) 전문가 1인 및 ITP 담당자가 사업비 적격 집행, 솔루션 도입 확인 (완료보고서 제출 후 솔루션 도입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진행) ○ 이상 없을 경우 성공판정 (종료)

□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 신청기간 : 2024. 1. 2.(화) ~ 1. 19. (금)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서식 1) 1부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 도입/공급기업별) 2부,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서식 3, 도입/공급기업별) 2부
2. 사업계획서(서식 4) 및 사업비 산출 내역 증빙자료 (견적서, 사양서, 거래내역서 등) 신청접수
3. 도입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4.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2022년 재무제표증명원, 사업실적증명서
5. 도입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스마트공장 구축 실적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 필요 없음 (필요시 추가요청)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결격사유 점검(제조혁신센터)
 -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진위 및 적격 여부 확인
 - 참여제외 대상기업 해당 여부 확인
- 선정평가 : 대면 발표 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기업 고득점순 선정*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5인 이내)하여 진행
 - 평가위원은 IT, 공정, 데이터 분석, 스마트공장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 평가진행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
- 선정평가표 구성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대상 적합성 (20)	○ AS요청 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부품인지 여부	10	8	6	4	2
	○ 자체 구축 기업은 AS요청 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S/W, H/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부품인지 여부	10	8	6	4	2
지원 적정성 (30)	○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10	8	6	4	2
	○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를 측정	10	8	6	4	2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을 측정	10	8	6	4	2
관리 및 활용 (40)	○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운영 보유 역량	10	8	6	4	2
	○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15	12	9	6	3
	○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활용 노력	15	12	9	6	3
지원성과 (10)	○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	10	8	6	4	2
가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각 1점 부여(최대3점, 가점대상 적용기간은 최근 3년 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평가 점수		103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발 기준

-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 신청시 제출
- 2) ‘대상적합성→지원적정성’ 점수 고득점 기업 순

□ 원가감리

- 선정기업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에 대한 원가 적정성 검토
 - 원가계산기관에서 책정한 사업비 반영하여 협약 진행
 - *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 협력(인천TP 지정) 및 외주화 검증 절차
 - 필요시 도입/공급기업의 증빙자료 세부내역(서) 임의제출 및 검토
 -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 및 사업계획(서) 보완

□ 협약체결

- 인천TP-도입기업-공급기업 3자간 협약체결
 - 체결방식 : 협약서 3부 기업 날인 및 간인하여 제출 (TP 내방)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간*
 - * 구축 진행도에 따라 사업 사전종료 및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인천TP 승인 必)

□ 지원금 지급

- 제출기한 : 협약체결일 기준 2주일 이내
- 제출서류

1. 인천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개선(A/S) 지원사업 사업협약서(날인 및 간인 포함) 3부
2. 인천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개선(A/S)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사업비 검증 완료, 최종) 1부
3. 인천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개선(A/S) 지원사업비 신청서 및 동 사업 전용 도입기업 금융계좌*사본 각 1부
*신규계좌 사용 요망
4. 도입기업 부담금 입금 확인증 또는 약속서 1부
5. 이행(지급)보증증권
 - 계약기간 : 협약기간
 - 보험기간 : 협약기간+3개월
 - 계약자 : 도입기업
 - 피보험자 :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자번호 139-82-02466)

□ 중간점검

- 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필요시 사업 담당자가 구축사업장 방문하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일시 : 협약기간 중
 - 점검내용 : 사업비 집행 적정 여부 및 사업 정상 추진 여부

□ 최종평가

- 평가일시 : 보고서 제출 이후 2주 이내
- 평가방법 : 제출 보고서 및 산출물 근거로 2인 1조(위원 1인, TP 담당자 1인)로 솔루션 구축 여부에 대하여 현장 확인
 - 완료점검 결과('적정' 또는 '보완' 완료시)를 토대로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화 이행결과에 대해 '성공', '보완', '실패'로 최종 평가(판정)하고 '실패' 판정시 도입기업으로부터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시행
- 구축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화 이행결과에 대해 도입/공급기업이 완료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납품검수 확인서 포함, 서식 별첨) 제출
 - 제출서류
 - 1. 최종완료보고서
 - 2. 납품검수확인서
 - 3. 사업비 집행내역
 - 4. 사업비 사용 일체 증명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서, 계좌내역

□ 지원금 환수 관리

- 지원금 전액환수 조건

- 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 2. 협약 이후,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과제를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
- 3. 점검 및 평가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 4. 사업종료 전 도입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기내용 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과제의 포기 및 중단, 실패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

□ 기타사항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결과물(매뉴얼, 시스템 개발소스, 관련 데이터,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는 도입기업 귀속임.
- 협약 체결 이후 사업계획서 내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임의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ITP에 해당 변경 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 가능)
- 협약기간 연장은 협약종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만 가능하며, 연장 신청시 연장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必
- 도입기업은 사업 결과물(도입 H/W 및 S/W 등)에 대하여 사업 성공 판정일

로부터 5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사업비 환수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인권보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났을 시 즉시 시정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원사업 수혜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접수안내

- 신청기간 : 2024. 1. 2.(화) ~ 1. 19. (금)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비즈오케이(<https://bizok.incheon.go.kr>)을 통해 접수
 - 기업지원 신청 → ‘2023 제조데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서식 1) 1부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 도입/공급기업별) 2부,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서식 3, 도입/공급기업별) 2부
 2. 사업계획서(서식 4) 및 사업비 산출 내역 증빙자료 (견적서, 사양서, 거래내역서 등) 신청접수
 3. 도입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4.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2022년 재무제표증명원, 사업실적증명서
 5. 도입기업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5.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김혜수 대리(032-260-0624)